

시흥 장현지구 C-2BL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기도 시흥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6.28.(금)	24.07.03.(수)	24.07.08.(월)	24.07.10(수)	24.07.15.(월)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28(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07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1.30(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7001664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7.03.(수)	24.07.08.(월)	24.07.10(수)	24.07.15.(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2, 근린생활시설 102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시행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해당없음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23175호(2024.6.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현 공공주택지구 C-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928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24년07월) / 최초 입주개시일 2020년 07월 24일]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4930007	01	084.9613A	84A	84.9613	24.5878	109.5491	50.6839	160.2330	55.2019	2	2
합 계											2	2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동	호수	총공급금액						
			아파트 분양가 (A)			부대경비(B)	계(C=A+B)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613A	1108	901	129,774,000	260,726,000	390,500,000	3,700,000	394,200,000	78,840,000	315,360,000
084.9613A	1111	2403	129,774,000	269,726,000	399,500,000	3,700,000	403,200,000	80,640,000	322,56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수수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키볼출)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무상선택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 불가)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시(20%)	잔금(80%)	비고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084.9613A	1108	901	8,010,000	1,602,000	6,408,000	파우더장(입식) 설치
084.9613A	1111	2403	8,010,000	1,602,000	6,408,000	파우더장(입식) 설치

-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항목의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을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및 잔금),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717-910019-96404	주식회사 대영아이에스디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요망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 수납불가)
- ※ 계약금 납부자 중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잔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된 지정일자에 상기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108동 9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8901 홍길동'으로 기재)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08.(월) ~ 2024.07.17(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7.0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본인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불가)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기간 :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지참
대리인	○		공통서류	본인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계약자의 인감도장	본인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일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대리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 일시: 2024. 07. 08(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4.07.15.(월) (10:00~16:00) 장소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82번지. 근린생활시설 102호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p>
--	------------------------------------------------------------------------------------------------------------------------------------------------------------------------------------------------------------------------------------------------------------------------------------------------------------------------------------------------------------------------------------------------------------------------------------------------------------------------------------------------------------------------------------------------------------------------------------------------------------------------------------------------------------------------------------------------------------------------------------------------------------------------------------------------------------------------------------------------------------------------------------------------------------------------------------------------------------------------------------------------------------------------------------------------------------------------------------------------------------------------------------------------------------------------------------------------------------------------------------------------------------------------------------------------------------------------------------------------------------------------------------------------------------------------------------------------------------------------------------------------------------------------------------------------------------------------------------------------------------------

X 단지 여건 등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 발코니, 인동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인접건물의 창호간의 시야간섭, 입면 장식, 지붕 태양광 집열판,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인접하여 옹벽 등의 토목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장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지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전파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단지 외에 서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4차선(감속포함 5차선)차도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필히 확인하셔야 함.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시흥가온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시흥가온중학교에 배정 될 계획임.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의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전체 동의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적용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경사고정식이며 부대시설 및 관리사무실 등에 전기공급용으로 수량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발생하는 전력을 즉시 공용부위에 공급하는 방식(축전기능없음)으로써 기상조건, 관리소홀, 기계고장 등으로 발전이 원활치 못할 경우, 사용량이 발전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전력으로 전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106, 1107, 1108동 옥상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권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 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 하여야 함.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 등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재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 무인택배시설은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1개소(1103동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방환기는 개별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배관노출 및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 출입구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학원차량 이용을 위한 승·하차장(Drop Off-Zone)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대형차량의 진입, 소음, 차량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동은 이용하는 이용객 의해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상가 건축물에 의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난방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집하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부속안전시설물에 의해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지하주차장은 데크 진입이 가능한 1개층과 지하 2층(1개층)으로 총 2개층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주차 이용시 주동간 주차불균형/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며 비상시 재연설비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당첨동호수의 설계를 사전에 필히 인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바람.
- 본 단지는 아파트·상가 출입구 및 주차구획은 별도 계획되어 있음.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2.3M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구 차로는 6M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일부 구간은 층고 및 차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1103, 1106동 사이에 총 8대 설치되어 있음.(급속충전 2대 포함)

- 1101, 1102, 1103, 1104, 1110동의 정면(남측)에 돌출된 특화몰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계획에 의해 1103, 1105, 1106동은 PIT 또는 필로티로 진입하며 해당 출입구의 디자인은 일부 다른 동들과 다를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상가 전면 및 각 상가별로 바닥의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발코니확장) 공사는 기설치된 사항으로 추후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적용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복도 등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108동 옥상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권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현공공주택지구 여건상 단지 동측 야산에는 송전선로(345kV) 및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으며(지중화 계획없음) 1101동 대지경계에서 송전탑과의 최단거리는 약 115m로 전자파 등에 예민한 사람의 경우 이에 따른 신체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경관 등에 불편 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단지 동측 인접 야산에 개인의 분묘단지와 장현공공주택지구의 인근 남측부와 인접한 지역에 건사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한 미관상 불편함 또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송전철탑 및 고압송전선로가 있으므로 본 주택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필히 현장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본단지 400m내에 가온근린공원 내 배수지 및 저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등을 제기하실 수 없으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7.11.30.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 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 내용

항목	공종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1,815,729,72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3,204,950,128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별포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밖의비용	13,206,976,152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128,227,656,000	-
공사비	토목	12,177,742,000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75,737,699,000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10,999,251,00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
	그밖의 공종	33,484,863,000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밖의 공사비	24,732,601,000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57,132,156,000	-
간접비	설계비	3,107,555,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3,436,179,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54,325,187,380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분담금 및 부담금, 기타 사업비성 경비
	계	60,868,921,380	-
그 밖의 비용		30,444,866,620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376,673,600,000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목	공종	금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111,815,729,720	
	택지비 가산비	16,412,221,252	-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교육세 등), 암석지반 및 흙막이 공사비
	소계	128,227,950,972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218,021,956,156	-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30,444,866,620	- 법정초과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정보통신), 분양보증수수료
	소계	248,466,822,776	
합계		376,694,773,748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기부채납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m ²)	56,670.0000m ²	54,544.2584m ²	-	2,125.7416m ²	13.97 %	192.81 %

■ 단위 세대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⑤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대피공간)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2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 높이 등의 생산제원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능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 및 상가, 도로, 인접지형에 접한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개구부창호, 장애인 경사로, 단지내외 시설 설치 등으로 외부인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핀자국이 발생함.
- 본 단지의 공동체텃밭1, 2 및 부속정원, 테라스세대의 텃밭은 별도의 식재 없이 일반토사로 마감됨.

■ 부대복리시설

- ※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방과후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 ※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64조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창호도
고효율 기자재	적용	장비 일람표,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전열설비 평면도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전등설비 평면도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조명기구 상세도
자동 점멸스위치(공용부위)	적용	공용화장실 전등 설비 평면도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난방배관 평면도
절수기기	적용	위생기구 일람표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 6조 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 6조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 6조 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 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 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하였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녹색건축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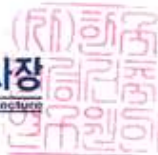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시흥농곡역 모아미래도예류포레	인증번호	: KRIEA-G2020C-1863
건축주	: ㈜대영아이에스디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0년 7월 20일	유효기간	: 2020. 07. 02 - 2025. 07. 01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인증등급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5층		
연면적	: 162,453.8905㎡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공사시공자	: ㈜모아종합건설		
공사감리자	: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7월 2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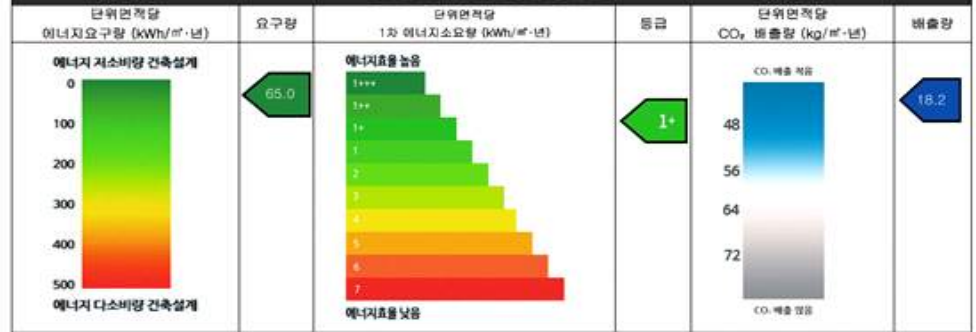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시흥농곡역 모아미래도예류포레	인증번호	: 20-주-본-1+-0054
준공연도	: 20200720	평가자	: 김동희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62453.8905(㎡)	유효기간	: 2030-06-02 까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주)모아종합건설	인증등급	: 1+등급
공사감리자	: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2.2	29.9	23.2	5.1
급탕	30.7	35.7	26.5	5.9
조명	12.1	11.7	32.1	5.5
환기		3.6	10.0	1.7
합계	65.0	80.9	91.8	18.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020년 06월 02일



■ 문의전화 : 1899-1366(평일 :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감리회사
상 호	(주)대영아이에스디	(주)모아종합건설	(주)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27-12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61, 3층(운암동,모아미래도빌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11, 201호(복정동)
등 록 번 호	200111-0072854	205911-0005185	131111-0202364